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 길 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 길 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